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련 공헌자 해당 여부 심사·결정을 추가 〉
■ 박찬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170호)

2026. 2.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조 문 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찬대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12. 11.
3. 회 부 일 : 2025. 12.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이 법에 따른 관련자와 그 유족에 대한 사실 심사와 그 밖의 보상 등의 심의·결정을 위하여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따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인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5·18민주화운동에 큰 공헌을 한 외국인 위르겐 힌츠페터와 찰스 헨틀리의 경우 본인들이 사후 한국에 안장되기를 희망하였을 뿐 아니라 특히 위르겐 힌츠페터의 경우에는 5·18기념재단에 의하여 추모비 건립 및 추모공원까지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5·18민주화유공자로 규정할 법적 근거가 없음으로 인하여 5·18민주유공자로서의 예우와 국립5·18민주묘지 안장이 불가능한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공헌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한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찬대위원이 대표발의한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생략) ② 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u><신설></u> 2. ~ 5. (생략) ③ ~ ⑤ (생략)	제4조(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u>5·18민주화운동과 관련 공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u> 3. ~ 6. (현행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것이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의 요건은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 및 지원을 받은 사람임.¹⁾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의 요건 》

구분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각호
유공자의 요건	1.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5·18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후유증으로 사망한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은 사람 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장애등급(이하 "장애등급"이라 한다)의 판정을 받고 보상을 받은 사람 3.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

※ 관련 법조문 등을 참고하여 작성

그런데, 이에 따를 경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행방불명·상이 등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은 자만 유공자로 인정되고, 위르겐 힌츠페터²⁾, 찰스 헌틀리³⁾ 등과 같이 피해 없이 공헌만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유공자로 인정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법 제4조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의 기능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심사·결정을 추가하려는 것임.⁴⁾

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유공자가 되기 위한 공헌을 심사하는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제4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공자가 될 수 없음.

2) Jürgen Hinzpeter. 독일의 기자로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영상에 담아 외국에 알리는 데 기여함.

3) Charles Huntley. 미국인 선교사로 5·18민주화운동 참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시민들을 지원함.

4) 또한 이에 따라 공헌이 인정되는 사람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함께 발의되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중임.

이를 통해 상이 등의 피해가 없는 공헌이 있는 사람들도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되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다만, 이 법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독자적인 입법 목적을 갖는 별도의 법체계 하에서 규율되는 사항인 점, 이 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은 행정안전부인 반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관련 사무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관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공헌자 해당 여부를 심사·결정하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하는 것은 이 법의 입법 목적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벗어날 뿐 아니라, 법률에 따라 부여된 행정기관의 소관과도 다소 부합하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고 봄.⁵⁾

개정안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이 법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독자적인 입법 목적을 갖는 법률로서, 각각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등에 대한 보상 및 지원”, “5·18민주 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국가보훈부장관이 특별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공헌을 인정하는 경우 ‘5·18민주유공자’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방법도 대안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임.

에 대한 예우”라는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법에서 5·18민주화운동 공헌 내용을 심사·결정하는 것은 입법목적과 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벗어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3